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70호 2013. 5. 6 (월요일)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336호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 하동군 공고 제2013-337호 하동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13-340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3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공고 제2013-336호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2. 제안 이유
 - 환경부·행정안전부 표준 급수 조례 개정(2011.12.21) 및 표준안 시달에 의해 동과계량기의 공사비 부담을 명확히 하고 수도요금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
3. 주요 골자
 -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에 동과계량기(계량기대금 제외)를 포함하는 내용 개정 (안 제11조)
 - 수도요금 정산규정 삭제 (안 제24조)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수도요금 납부방법 신설 (안 제30조의 2)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55-880-2593, FAX 055-880-2599, dove156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3. 5.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환경부·행정안전부 표준 급수 조례 개정(2011.12.21) 및 표준안 시달에 의해 동파계량기의 공사비 부담을 명확히 하고 수도요금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에 동파계량기(계량기 대금 제외)를 포함하는 내용 개정 (안 제11조)
- 나. 수도요금 정산 규정에 기존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사용자에게 정산의무 부과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삭제 (안 제24조)
- 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수도요금 납부방법 신설 (안 제30조의 2)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환경부·행정안전부 표준급수조례(2011.12.21.), 경상남도 맑은물관리과-19499(2011.12.22)호에 근거
- 나. 기 타 : 신. 구조문 대비표 별첨
- 다. 예산조치 : 비용 추계서 참조
- 라. 합 의 : 기획감사실
- 마.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일이상
 - 나) 예고방법 : 신문게재, 우리군 홈페이지게재
 -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노후 계량기와 급수 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교체계량기 대금은 고지서에 포함한다.

제20조제1항7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 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p> <p><u>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u></p>	<p>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u>하고, 노후 계량기와 급수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u></p> <p><u>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교체계량기 대금은 고지서에 포함한다.</u></p>
<p>제20조(신고)</p> <p>7.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권·권리권을 취득하였을 때</p>	<p>7. <삭 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p> <p>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 <삭 제></p>
<p><신 설></p>	<p>제36조의2</p> <p>(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p> <p>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p>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 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동파계량기등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므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재정이 수반됨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전제 :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동파계량기 카드수수료 (2.5%), 카드결제 비율은 2013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납부액 최저 10%, 최고 14% 년 1%증가
-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6)	
세 출	계	3,791.7	4,169.9	4,547.9	4,928	5,061	22,498.5
	수도요금	3,414	3,754	4,095	4,437	4,478	20,178
	급수공사비	377	415	452	490	582	2,316
	동파계량기	0.7	0.9	0.9	1.0	1.0	4.5
세	계	136,533	150,186	163,839	177,493	191,146	819,197
입	수도요금	136,533	150,186	163,839	177,493	191,146	819,197

3. 부대의견

- 동파계량기의 비용부담 중 설치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며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등을 신용 및 직불카드로 결제하므로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 지급 필요

4. 협의사항 : 예산담당부서

5. 작 성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계 중

하동군 공고 제2013-337호

하동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2.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요구(2012.4.18)가 있어 환경부 수도정책과-925호(2013.2.18.)에 의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대표자 협의회에서 자체 상수도 규약에 따라 신규 전입자에게 수도시설 공사비 외에 입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하지 못하게 조례에 규정코자함
3. 주요 골자
 -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 (안 제1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055-880-2593, FAX 055-880-2599, dovel56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3. 5.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요구(2012.4.18)가 있어 환경부 수도정책과-925호(2013.2.18.)에 의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대표자 협의회에서 자체 상수도 규약에 따라 신규 전입자에게 수도시설 공사비 외에 입회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하지 못하게 조례에 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을주민과 신규 전입자간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임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기획감사실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일이상

나) 예고방법 : 신문게재, 우리군 홈페이지게재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하 동 군 공 보

(10) 제 370 호

하동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리비용)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3조(관리비용)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은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 여 한다. <u>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u></p>	<p>제13조(관리비용) ----- ----- ----- <u>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 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상수도 연결공사비 이외에 유지관리를 위한 입회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재정 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미첨부

4.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계 종

하동군 공고 제2013-340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 6.25 및 월남 참전 중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난을 겪고있는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 조례명을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포함 (안 제1조)
 - 전몰군경 유족의 정의를 포함 (안 제2조)
 - 지원 대상에 전몰군경 유족 포함(안 제3조)
 -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를 조정함(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3일 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실, 전화 055-880-2346, FAX 055-880-2349, e-mail parksm82@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6.25 및 월남 참전 중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난을 겪고있는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포함 (안 제1조)
- 전몰군경 유족의 정의를 포함 (안 제2조)
- 지원 대상에 전몰군경 유족 포함(안 제3조)
-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를 조정함(안 제5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9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합 의 : 기획감사실
- 그 밖의 사항 : 창원시, 창원군의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참고 하였음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공자”를 “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몰군경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본문 단서 중 “제2조의 각 호”를 “제2조”로 하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3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참전명예수당은 연4회로, 지급 시기는 분기말로 한다.”를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은 조 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p> <p>2. ~ 3 (생략)</p> <p>제5조(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6조 (생략)</p> <p>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연 4회로, 지급 시기는 분기 말로 한다. 다만, 지급시점에 사망한 때는 월 정산하여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8조 ~ 제9조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p> <p>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급신청) ① -----</p> <p>-----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p> <p>-----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 지급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 ~ 제9조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18) 제 370 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

참 전 명 예 수 당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보 훈 번 호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 금 계 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p>「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현 행 조 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5.조1875, 개정 2010.12.30.조1919>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개정 2009.11.25.조1875, 개정 2012.2.21.조197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만,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참전명예수당은 연 4회로, 지급 시기는 분기말로 한다. 다만, 지급시점에 사망한 때는 월 정산하여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의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당의 지급방법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370 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1.25.조18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및 제4조제1호는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09.12.30.조1878>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0.조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부 칙 <개정 2012.2.21.조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370 호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5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 진단서 사본 1부

관 계 법 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누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28) 제 370 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1.9.15>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